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)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)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)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에서 제7조).
- 라)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,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내용

(1) 안 제2조(정의)
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(정의) 규정을 인용하여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.

(2) 안 제4조(기본원칙)

- 안 제4조는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.(법 제3조 근거)

(3) 안 제6조(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)

-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및 시설·장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.(법 제15조 근거)

(4) 안 제7조(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)

-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법 제21조 근거)

다. 검토의견

-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은 국민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,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· 실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.
- 본 안건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금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문화예술교육사업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‘학교문화예술교육’ 과 ‘사회문화예술교육’ 으로 이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점차 융 · 복합하여 지역 내 학교-복지시설-평생교육기관-문화시설 등을 잇는 통합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,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 제정 현황(2022. 11월 기준)
 - 서울시 조례(2020. 5. 19)
 - 서울교육청(2015. 12. 31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